

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

깨끗한 전파이용환경 조성

-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
- 전파감시(Radio Spectrum Monitoring)
- 불법무선국 조사·단속
- 전파교란 대응 및 전파혼신 처리
- 국내·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

신속·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

- 무선국 허가·검사
- 방송국 검사
- 통신사업자 등록·신고
- 정보통신방송 분야 비영리법인 허가
-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

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

-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
- 불법감청설비 조사
- 전기통신설비 제공 감독
-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
- 방송편성비율 확인
-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기준 준수 관리

전파 이용 촉진

- 주파수 이용 현황 조사
- 전파혼신 조사
- TV 수신환경 조사
- 전파환경 측정 서비스
- 위성 전파환경 조사



국제 교류 협력

- 인접국가 전파관리 협력
- 국제 표준화 활동
- 전파관리 분야 국제교류
-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

기술 교류 및 연구 지원

- 전파통신 기술 지원
- 위성전파 측정 정보 제공

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!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.



중앙전파관리소는

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,
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.
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
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
안전한 방송통신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인터넷 전자민원 : emsit.go.kr
민원상담 : 080-700-0074



기관명	주소	전화번호
중앙전파관리소	(05830)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34	02-3400-2000
위성전파감시센터	(17413)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	031-644-5900
서울전파관리소	(08249)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	02-2680-1700
-서울북부사무소	(11604)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152	031-849-5800
부산전파관리소	(46703)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	051-974-5100
광주전파관리소	(58214)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	061-330-6800
강릉전파관리소	(25428)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	033-660-2980
대전전파관리소	(35283) 대전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	042-520-4100
-당진사무소	(31754)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	041-360-2800
대구전파관리소	(42043) 대구 수성구 동원로 90	053-749-2800
전주전파관리소	(55316)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	063-260-0070
제주전파관리소	(63037)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	064-740-2800
청주전파관리소	(28567)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	043-261-5811
울산전파관리소	(45013)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	052-231-8810

대한민국 전파 · 방송통신의 중심 중앙전파관리소

선박국 허가·신고 안내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중앙전파관리소

선박국에 대해 알아보까요?

선박국 허가·신고 안내

전파사용료는 어디에 쓰이나요?

■ 선박국이란?

선박에 설치하여 해안국 또는 선박 상호간 통신을 하는 무선설비를 선박국이라 합니다.

■ 선박국 무선설비 종류

선박국에는 초단파대 무선설비(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, VHF(DSC), 중단파대 무선전화(MF/HF), 자동식별장치(AIS),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설비(EPIRB) 등이 있습니다.

■ 선박 종류별 무선설비

선박 종류	무선설비
2톤 이상 5톤 미만	VHF-DSC
5톤 이상	VHF-DSC, MF/HF
10톤 이상	VHF-DSC, MF/HF, AIS
24m 이상	VHF-DSC, MF/HF, AIS, EPIRB

※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된 3톤 이상 선박은 지능형 해상 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(LTE-M)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

※ 낚시어선은 선박길이와 관계없이 EPIRB를 설치해야 합니다.

■ 선박국 허가

선박국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선적항을 기준으로 해당 전파관리소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허가 없이 선박국을 운용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■ 무선국 재허가

허가받은 무선국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※ 재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허가가 실효됩니다.

■ 선박국 운용휴지·폐지신고

허가받은 선박국은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며, 선박 폐선 등으로 선박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폐지 또는 운용 휴지 신고를 해야 전파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■ 운용휴지 기간

1개월 이상 1년 이내이며,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운용 상태로 전환됩니다.

■ 시설자 변경신고

선박 매매, 상속 등으로 선박 양도 시 관할 지역에 선박 양도신고하고, 양수자는 전파관리소에 선박국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※ 선박국뿐만 아니라 V-PASS 및 LTE-M도 함께 시설자 지위승계를 해야 합니다. 함께 지위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■ 전파사용료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전파진흥을 위해 사용됩니다.

■ 사용기간 및 납부기간

사용기간	납부기간
1. 1 ~ 3. 31	5. 18 ~ 5. 31
4. 1 ~ 6. 30	8. 18 ~ 8. 31
7. 1 ~ 9. 30	11. 18 ~ 11. 30
10. 1 ~ 12. 31	다음 연도 2. 18 ~ 2월 말일까지

- ※ 1년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10% 감액
- ※ 자동이체로 정해진 출금일에 자동 납부 가능
- ※ 선박국 전파사용료 : 분기별 3천원

무선국 허가·신고 상담 및 신청

☎ 080-700-0074 (무료)

인터넷 허가신청: emsit.go.kr

민원신청 → 인허가민원신청 → 해당 민원 클릭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중앙전파관리소

홈페이지 : crms.go.kr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: emsit.go.kr
전파·방송통신민원 : 080-700-0074